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기관, 면제대상 교육, 교육시간, 교육내용, 교육방법 등을 규정(안 제28조의2, 별표 4, 별표 5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(법률 제21853호, 2026. 7. 7. 공포, 2027. 1. 8. 시행)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기관, 면제대상 교육, 교육시간,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규정
-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, 건설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, 선원법 등에 따른 승무 전 안전교육을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교육으로 규정
-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(3시간 이상)은 별표 4, 교육내용은 별표 5에 규정
-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직무교육 이수 간주 기준 명확화(안 제30조 및 제35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후 같은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할 직무교육을 명확히 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대상자로 선임·채용된 경우 인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신규교육 면제한다는 규정 추가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직무교육 이수 간주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